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93. 7. 13.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6月 10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3年 6月 12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19回 永登浦區議會(開會中)第1次 委員會(1993年 7月 13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辛金柱)

- 가. 提案理由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처리절차가 현행 6단계로서 민원인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여러차례 방문, 번잡하므로 구청장 행정권한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나. 主要内容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건축허가 득하고 철거·멸실되는 4층이하, 3,000㎡미만 건축물)” 업무를 신설하여 위임.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 가. 1993. 6. 10. 영등포구청장이 개정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철거 또는 멸실신고를 하게 되어있어
- 나. 현행 처리절차는 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처리흐름도(6단계)와 같이 민원인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여러차례 방문하게 되는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4층이하 3,000㎡미만)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구청장의 행정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처리절차를 3

단계로 축소 조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바 이는 민원행정쇄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 다. 동 개정조례안중 철거 또는 멸실신고 대상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제한함은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사료되므로 이를 삭제한 후 동 개정조례안은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6	제출년월일: 1993. 6. 10.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	------------------------------------

1. 제정이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처리절차가 현행 6단계로서 민원인이 구청과 동사무소를 여러차례 방문, 번잡하므로 구청장 행정권한사무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건축허가 득하고 철거, 멸실되는 4층이하, 3,000㎡ 미만 건축물)” 업무를 신설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규
 - 1. 건축법 제27조
 -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존 건축물철거후 건축물착공을 위한 현행 신고제고 및 개선후 처리흐름도-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단의 "37.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등 지도감독" 다음에 "38.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건축허가 득하고 철거, 멸실되는 4층이하, 3,000㎡미만 건축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건축허가 득하고 철거, 멸실되는 4층이하 3,000㎡ 미만 건축물)	건축법 제27조	위임	동장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 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종류	수임기관
1~37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3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설>				38.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건축허가 득하고 철거, 멸실되는 4층이하, 3,000㎡ 미만 건축물)	건축법 제27조	위임	동장

기존건축물철거후 건축물착공을 위한 현행신고제도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건축물대장말소신청 : 건물의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신고
- 건축물 착공신고 : 건축주가 구청장에게 신고

현행 신고업무 처리 흐름도

<제1단계>

시민봉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 접수

<제2단계>

건축과처리 ○ 동장에게 현장확인후 철거확인서 발급 지시

<제3단계>

동 장 ○ 멸실확인후 철거확인서작성, 교부

<제4단계>

건물소유자 ○ 확인서 수령
○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제5단계>

구 청 ○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접수(시민봉사실)
○ 건축과 처리, 시민봉사실 통보
○ 시민봉사실 대장 정리

<제6단계>

건축주 ○ 건축물착공신고서 작성 구청장 제출
○ 시민봉사실 접수 신고서 건축과 이송

개선후 처리흐름도

<제1단계>

건축주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 건축물대장 멸실 신청
 - 건축물 착공신고
- } 동장에게 제출

<제2단계>

동장

1.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서 접수
 - ① 동장이 직접처리 (권한위임)
 - ※ 대상: 건축허가후 철거되는 소형건물
 - ② 구청장에게 이송처리
 - ※ 대상:
 - 건축허가 없이 기존건축물철거
 - 5층이상 대형건축물
2. 건축물대장멸실신청서 접수처리

철거확인후 확인서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

동장이 직접 구청장(건축과)에 이송
3. 건축물 착공신고서 접수후 구청장에게 이송

<제3단계>

구청장

1.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처리
2. 건축물대장 멸실신청서 처리
 - 건축과: 해당실과 및 관계기관 통보
 - 시민봉사실: 건축과 통보로 대장정리
3. 건축물착공신고서 처리(건축과)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1.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서 처리권한을 동장에게 위임
2. 건축물대장멸실신청서, 건축물착공신고 접수권을 동장에게 내부위임